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000호, 2025. 7. 22. 공포, 2026. 1. 23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스마트농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 포함사항에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을 추가(안 제6조)
- 나. 스마트농업법 제11조제4항 신설에 따라 스마트농업 연구 비용의 우선지원이 가능한 학교·기관·단체·기업 지정(안 제7조의2)
- 다. 스마트농업법 제14조제8항 개정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기술 수준 평가 시 고려사항, 지원사항 등 규정(안 제10조의2)
- 라. 스마트농업법 제19조 제목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(안 제13조의2)
- 마. 스마트농업법 제14조제8항 개정에 따라 위탁 가능 업무로 관련 시설 평가·지원, 관련 기업의 육성 사업 추가(안 제14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

제7조의2,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)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·기관·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·기관·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.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
2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
3.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
4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
5. 기업(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), 연구소,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(다만,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)
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

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·기관·단체·기업

제10조의2(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등)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(이하 “기술수준 평가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데이터 수집·분석 기술수준
2. 환경 제어 기술수준
3.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
4.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식으로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소관하는 시·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의 수립·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실증 지원
2.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·교육 지원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

세부기준, 절차,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3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)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사업
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사업
3.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증 또는 기반 조성
사업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
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4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시설 평가 및 지원

10의2.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사업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~ 5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7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)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·기관·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·기관·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.</u> <u>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</u> <u>2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</u> <u>3.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</u> <u>4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</u> <u>5. 기업(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</u>

<신 설>

포함한다), 연구소, 대학 등이
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
따른 비영리법인(다만, 「사립
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법인은 제외한다)

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
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
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학교·기관·단체·기업

제10조의2(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
기술수준 평가 등) ① 법 제14조
제8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시설에
대한 기술수준 평가(이하 “기술
수준 평가”라 한다)에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데이터 수집·분석 기술수준
2. 환경 제어 기술수준
3.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

4.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
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
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는
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식
으로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
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

<신 설>

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소관하는 시·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의 수립·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실증 지원

2.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·교육 지원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, 절차,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3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)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

	<u>역량 제고 지원사업</u> <u>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사업</u> <u>3.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증 또는 기반 조성 사업</u> <u>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제14조(업무의 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 9. · 10. (생략) <u><신설></u> 11. · 12. (생략) ② (생략)	제1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8의2.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시설 평가 및 지원</u> 9. · 10. (현행과 같음) <u>10의2.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사업</u> 11. · 1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421